

교육중점교수 인사에 관한 내규

(제정 2014.12.1., 개정 2024.7.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명지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의 2의 교육중점교수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변경 2026.1.1.)

제2조(정의) 교육중점교수라 함은 교육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변경 2026.1.1.)

제3조(자격) 교육중점교수는 교육공무원법상 초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변경 2026.1.1.)

제4조(초빙절차) 교육중점교수의 초빙절차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규정과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한다.(변경 2026.1.1.)

제5조(직급) 교육중점교수의 최초 임용 직급은 조교수로 하며 승진 심사를 거쳐 부교수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직급은 부여하지 않는다.(변경 2026.1.1.)

제6조(재계약 임용) ①교육중점교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 임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임용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변경 2026.1.1.)

②교육중점교수의 재계약 임용기준은 [별표1] 또는 [별표2]의 교육중점교수 재계약 및 승진 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한다.(변경 2015.6.1., 2026.1.1.)

제7조(승진) 교육중점교수의 승진절차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규정과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하되 승진 임용기준은 [별표1] 또는 [별표2]의 교육중점교수 재계약 및 승진 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한다.(변경 2015.6.1., 2026.1.1.)

제8조(보수) 교육중점교수의 보수는 교직원보수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다.(변경 2026.1.1.)

제9조(권리와 의무) ①교육중점교수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복무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생교육 및 대학발전에 힘써야 한다.(변경 2026.1.1.)

②교육중점교수의 책임시간(전임교수가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기본 주당 강의시간)은 학부소속 교원은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소속 교원은 대학원과정에서 시간계정으로 해당 학년도 2개 학기 합계 18시간으로 하되 학기당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내 타 소속에서 강의를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에는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변경 2026.1.1.)

③교육중점교수의 외부출강은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얻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변경

2026.1.1.)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과 제 규정 및 우리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심사대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이전에 시작되는 승진임용 및 재계약 임용 심사 대상자는 종전 규정의 [별표1]을 적용하고, 심사대상기간이 2026년 3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승진 임용 및 재계약 임용 심사 대상자는 [별표2] 교육중점교수 재계약 및 승진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강의전담교수 재계약 및 승진 심사기준 (변경 2016.10.1., 2022.3.1., 2024.7.1.)

강의전담교수 재계약 및 승진 심사기준

평가영역 (반영비율)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최대점수	대상기간
I. 교육(60)	강의평가		강의 평가점수 환산표	40점	임용기간중 심사진행 학기 제외
	책임시간 준수		책임시간 준수 여부	10점	
	강의계획서 입력		강의계획서 입력기한 준수 여부		
	성적입력(정정포함)		성적 입력(정정포함)기한 준수 여부		
	출석부 제출		출석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		
	포트폴리오 제출		포트폴리오 입력기한 준수 여부		
	교수법 개발		교수법 개발(교수법연수, 신규교과개발, 원어강의 A급 등)		
	학생 상담 및 지도		학생상담 횟수를 평가	5점	
II. 연구(20)	인문사회, 예술체육, 건축계열	국제 또는 국내 저명학술지 논문	재계약 : 책임저자 1편 이상 승진 : 책임저자 2편 이상	20점	임 용 기 간 전 체
	자연과학, 공학계열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III. 교 육수 행 (20)	교내봉사 및 행정업무 협조		교수업적평가 및 교내 내부분서	10점	
	교내외에서의 올바른고 적절한 언행 및 태도 학과, 단과대학 등 학내 구성원으로서의 화합과 노력 학사관련 문제 발생시 시정 노력			10점	
재계약 및 승진 기준	1] 재계약 및 승진임용 대상자는 ① 강의평가 취득점수가 75점 이하인 학기가 강의평가 심사대상학기 수의 50% 이하 이고, ② I, II, III.의 점수의 합산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함. 2] 국제저명학술지: SCOPUS, SCI(E), SSCI, A&HCI 3] 국내저명학술지: KCI 등재(후보)지				

[심사기준 해설]

1. 강의평가

① 강의평가는 소속과정 강의만을 대상으로 함

※ 소속과정은 단과대학 소속 교원은 학사과정, 대학원소속 교원은 대학원 과정을 의미함.

② 강의평가의 심사대상학기는 임용기간 중 심사가 진행되는 당해 학기를 제외한 매 학기를 의미함.

③ 심사대상학기의 강의평가 취득점수는 해당학기 강의과목별 강의평가 취득점수의 평균으로 하며, 각 심사대상학기의 강의평가 취득점수에 아래 점수환산표를 적용하여 40점을 만점으로 하는 평가 점수(환산점수)를 부여함. (변경 2016.10.1.)

④ 평가점수는 ③의 심사대상학기의 강의평가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총 심사대상학기의 수로 나누어 산출된 점수로 하며, 강의평가점수에 아래 평가점수 환산표에 의거 40점을 만점으로 하는 평가점수(환산점수)를 부여함. 단, 최종 강의평가 취득점수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으로 함. (변경

2016.10.1.)

강의 평가점수 환산표 (변경 2016.10.1.)

강의평가 취득점수	환산점수	강의평가 취득점수	환산점수	비고
90점초과	40	78점초과~80점이하	28	
88점초과~90점이하	38	76점초과~78점이하	26	
86점초과~88점이하	36	74점초과~76점이하	24	
84점초과~86점이하	34	70점초과~74점이하	22	
82점초과~84점이하	32	70점이하	20	
80점초과~82점이하	30			

2. 책임시간

- ① 책임시간은 시간계정으로 해당학년도 2개 학기 합계 18시간이며 소속과정에서 강의하여야 함.
- ② 책임시간 미달시 1시간당 1점씩 감점함. 다만, 폐강으로 인한 책임시간 미달은 제외한다.(변경 2024.7.1.)
- ③ 소속과정 이외에서 강의할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시간으로 인정함.

3. 강의계획서 : 주어진 기한에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하며, 지연 입력시 과목당 1점, 미입력시 2점을 감점함.

4. 성적입력(정정포함) : 주어진 기한에 성적을 입력 또는 정정 하여야 하며, 지연 입력시 과목당 1점을 감점함.

5. 출석부 제출 : 주어진 기한에 출석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 제출시 과목당 1점을 감점함.

6. 포트폴리오 제출 : 주어진 기한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 제출시 과목당 1점을 감점함.

7. 교수법 개발 : 교수법연수, 신규교과개발, 원어강의 A급 등 교육개설활동 참가시 1회당 1점을 부여함 (학기당 최대 2점)

8. 학생상담 및 지도 : 종합정보시스템의 학생상담, 학습상담에 입력된 실적에 한하며 20회당 1점, 학기당 최대 2점을 부여함.

9. 연구영역

① 재계약 : 임용계약기간 내에 인문사회,예술체육,건축계열은 국제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논문 책임저자 1편 이상
자연과학, 공학계열은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책임저자 1편 이상

② 승진 : 임용계약기간 내에 인문사회,예술체육,건축계열은 국제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논문 책임저자 2편 이상
자연 과학, 공학계열은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책임저자 2편 이상

③ ①과 ②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점, 미충족할 경우 0점

④ ①과 ②의 기준은 예술체육건축 계열을 포함한 모든 강의전담교수에게 적용되며 특정계열에 대한 대체업적은 인정되지 않음

10. 교내 행정업무 협조 : 매 학기 실시하는 교수업적평가, 학과와 단과대학에서 요청되는 사항 및 교내행정부서에서 요구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이행 및 기한준수 여부

11. 교내외에서의 올바르게 적절한 언행 및 태도, 학내 구성원으로서의 화합과 노력, 학사관련 문제 발생 시 시정노력

[별표2] 교육중점교수 재계약 및 승진 심사기준 (신설 2026.1.1.)

교육중점교수 재계약 및 승진 심사기준

2026. 3. 1.이후 심사대상기간이 개시되는 교원													
평가영역 (반영비율)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최대점수	대상기간							
I.강의평가 (40)	강의평가		강의 평가점수 환산표		40점	임용기간중 심사진행 학기 제외							
II.교육활동 (30)	책임시간 준수		책임시간 준수 여부		10점								
	강의계획서 입력		강의계획서 입력기한 준수 여부										
	성적입력(정정포함)		성적 입력(정정포함)기한 준수 여부										
	출석부 제출		출석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										
	포트폴리오 제출		포트폴리오 입력기한 준수 여부										
	교수법 개발		교수법 개발(교수법연수, 신규교과개발, 원어강의 A급 등)		5점								
	학생 상담 및 지도		학생상담(대학원생 논문 지도 포함) 횟수를 평가		10점								
교내·외 봉사		교수업적평가 봉사실적 건당 0.5점		5점									
III.연구(20)	인문사회·예술체육, 건축계열	국제 또는 국내 저명학술지 논문	재계약 : 책임저자 1편 이상 승진 : 책임저자 2편 이상		20점								
	자연과학, 공학계 열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IV.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 (10)	구분	항목	배점	평가기준 및 방법		10점	임용기간 전체						
	교원의 전문성	수업계획서, 자기평가서 등 내용을 기 준으로 평가 하되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5	1. 수업내용의 충실성(수업계획서 중심) : 심사기간내의 수업계획서 내용이 매학기 개선 및 변화가 있는지 여부 (동일하다면 감점요소), 입력항목의 누 락 및 부실 여부 등 2. 교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개 발(자기평가서 중심) :수업 및 학생 지도 등에 있어 교수로서의 전문 성 향상을 위한 개선, 개발, 발전 가능성 여부 등 <table><tr><td>1점</td><td>2개 항목 모두 미흡</td></tr><tr><td>3점</td><td>1개 항목 만족</td></tr><tr><td>5점</td><td>2개 항목 모두 만족</td></tr></table>				1점	2개 항목 모두 미흡	3점	1개 항목 만족	5점	2개 항목 모두 만족
				1점	2개 항목 모두 미흡								
				3점	1개 항목 만족								
5점	2개 항목 모두 만족												
책무	대학지정 및 법정의무 교 육 참여	5	미참여시 교육당 1점 감점 (건별)										
V.교원복무 준수(가감점)	복무 준수		심사기준 해설 11번 참조		±5점								
	상훈		심사기준 해설 11번 참조										
재계약 및 승진 기준	재계약 및 승진임용 대상자는 ① 강의평가 취득점수가 75점 이하인 학기가 강의평가 심사대상학기 수의 50% 이하 이고, ② I, II, III, IV, V의 점수의 합산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함. 단, 연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평점 총점과 관계없이 재계약 및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심사기준 해설]

1. 강의평가

① 강의평가는 소속과정 강의만을 대상으로 함

※ 소속과정은 단과대학 소속 교원은 학사과정, 대학원소속 교원은 대학원 과정을 의미함.

- ② 강의평가의 심사대상학기는 임용기간 중 심사가 진행되는 당해 학기를 제외한 매 학기를 의미함.
- ③ 심사대상학기의 강의평가 취득점수는 해당학기 강의과목별 강의평가 취득점수의 평균으로 하며, 각 심사대상학기의 강의평가 취득점수에 아래 점수환산표를 적용하여 60점을 만점으로 하는 평가점수(환산점수)를 부여함.
- ④ 평가점수는 ③의 심사대상학기의 강의평가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총 심사대상학기의 수로 나누어 산출된 점수로 하며, 강의평가점수에 아래 평가점수 환산표에 의거 60점을 만점으로 하는 평가점수(환산점수)를 부여함. 단, 최종 강의평가 취득점수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으로 함.

강의 평가점수 환산표

강의평가 취득점수	환산점수	강의평가 취득점수	환산점수	비고
90점초과 ~ 100점	40점	78점초과 ~ 80점이하	28점	
88점초과 ~ 90점이하	38점	76점초과 ~ 78점이하	26점	
86점초과 ~ 88점이하	36점	74점초과 ~ 76점이하	24점	
84점초과 ~ 86점이하	34점	70점초과 ~ 74점이하	22점	
82점초과 ~ 84점이하	32점	70점이하	20점	
80점초과 ~ 82점이하	30점			

2. 책임시간

- ① 책임시간은 시간계정으로 해당학년도 2개 학기 합계 18시간이며 소속과정에서 강의하여야 함.
- ② 책임시간 미달시 1시간당 1점씩 감점함. 다만, 폐강으로 인한 책임시간 미달은 제외한다.
- ③ 소속과정 이외에서 강의할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시간으로 인정함.
3. 강의계획서 : 주어진 기한에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하며, 지연 입력시 과목당 1점, 미입력시 2점을 감점함.
4. 성적입력(정정포함) : 주어진 기한에 성적을 입력 또는 정정 하여야 하며, 지연 입력시 과목당 1점을 감점함.
5. 출석부 제출 : 주어진 기한에 출석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 제출시 과목당 1점을 감점함.
6. 포트폴리오 제출 : 주어진 기한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 제출시 과목당 1점을 감점함.
- ※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 교과목포트폴리오는 성적평가표와 근거 자료 및 출석부로 같음.
7. 교수법 개발 : 교수법연수, 신규교과개발, 원어강의 A급 등 교육개설활동 참가시 1회당 1점을 부여함 (학기당 최대 2점)
8. 학생상담 및 지도 : 종합정보시스템의 학생상담, 학습상담에 입력된 실적에 한하며 20회당 1점, 학기당 최대 3점을 부여함.
9. 교내·외 봉사 : 매 학기 실시하는 교수업적평가 봉사실적 건당 0.5점(최대 5점)
10. 연구영역
 - ① 재계약 : 임용계약기간 내에 인문사회, 예술체육, 건축계열은 국제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논문 책임저자 1편 이상자연과학, 공학계열은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책임저자 1편 이상
 - ② 승진 : 임용계약기간 내에 인문사회, 예술체육, 건축계열은 국제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논문 책임저자 2편 이상자연 과학, 공학계열은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책임저자 2편 이상
 - ③ ①과 ②의 기준은 예술체육건축 계열을 포함한 모든 교육중점교수에게 적용되며 특정계열에 대한 대체업적은 인정되지 않음
 - ④ 국제저명학술지: SCOPUS, SCI(E), SSCI, A&HCI
 - ⑤ 국내저명학술지: KCI 등재(후보)지

11. 교원 복무준수

구분		항 목	배점	평가 기준 및 방법
복무 준수	징계, 주의·경고	정직(재계약 임용만 해당)	-4	건당 해당 배점점수 감점 (합산 최대 감점 : -5점)
		감봉(재계약 임용만 해당)	-3	
		견책(재계약 임용만 해당)	-2	
		주의·경고(불문경고 포함)	-1	
	기타 복무 규정 준수	연구윤리 위반	-2	
		기타 복무 규정 미준수	-1	
상훈	훈·포장 및 표창 공적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3	건당 해당 배점점수 가점 (합산 최대 가점 : 5점) - 장기근속상은 제외
		관할청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이사장 또는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	+1	

[별지서식1] 강의전담교수용(학부(과)/단과대학(원)) (신설 2015.4.1.,2019.1.1., 2022.3.1.)

(재계약•승진)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

평가 대상자	학부(과)		직급		성명	
현재 평가 기간						

1. 교육(60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 근거
- 강의평가	40		· 강의 평가점수 환산표
- 책임시간, 강의계획서 성적입력, 출석부 포트폴리오	10		· 책임시간 준수 여부 · 강의계획서 입력기한 준수 여부 · 성적 입력(정정포함)기한 준수 여부 · 출석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 · 포트폴리오 제출기한 준수 여부
- 교수법 개발	5		· 교수법 연수 참가
- 학생 상담 및 지도	5		· 학생상담 횟수를 평가

2. 연구(20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 근거
- 국제 또는 국내 저명학술지 논문	20		· 재계약 : 책임저자 1편 이상 · 승진 : 책임저자 2편 이상 ※인문사회, 예술체육, 건축계열 : 국제 또는 국내 저명학술지 자연과학, 공학계열 : 국제 저명학술지

3. 교육수행(20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 근거
- 교내봉사 및 행정업무 협조	10		· 교수업적평가 및 교내 내부분서
- 교내외에서의 올바른 적절한 언행 및 태도 - 학과, 단과대학 등 학내 구성원 으로서의 화합과 노력 - 학사관련 문제 발생시 시정노력	10		

※ 강의전담교수 재계약 및 승진 심사기준 [별표1]의 내용에 열거하고 있는 평가항목을 기초로 평가

※ 평가근거는 구체적으로 기술

평가 점수 합계(100점 만점)	
-------------------	--

20 . . .

평가위원 직위 : 직급 : 교 수 성명 : ①

(재계약·승진) 임용 교원심사평정 의견서

평가 대상자	학과(부)		직급		성명	
현재 평가 기간						

평가영역 평가위원	교육 (60)	연구 (20)	교육수행 (20)	합계 (100)
A				
B				
C				
D				
E				
F				
G				
H				
I				
J				
총 합 의 견 :				

* 심사위원은 무기명으로 기재 / 대외비 처리 요망

20

심사위원장 : (인)

[별지서식3] 교육중점교수용(학부·학과·전공/단과대학(원)) - 2026.3.1. 이후 심사대상기간 개시 교원
(신설 2026.1.1.)

(재계약 • 승진)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

평가 대상자	학부·학과 ·전공		직급		성명	
현재 평가 기간						

1. 강의평가(40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 근거
- 강의평가	40		· 강의 평가점수 환산표

2. 교육활동(30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 근거
- 책임시간, 강의계획서 성적입력, 출석부 포트폴리오	10		· 책임시간 준수 여부 · 강의계획서 입력기한 준수 여부 · 성적 입력(정정포함)기한 준수 여부 · 출석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 · 포트폴리오 제출기한 준수 여부
- 교수법 개발	5		· 교수법 연수 참가
- 학생 상담 및 지도	10		· 학생상담(대학원생 논문 지도 포함) 횟수를 평가
- 교내외봉사	5		· 교수업적평가 봉사실적 건당 0.5점

3. 연구(20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 근거
- 국제 또는 국내 저명학술지 논문	20		· 재계약 : 책임저자 1편 이상 · 승진 : 책임저자 2편 이상 ※인문사회, 예술체육, 건축계열: 국제 또는 국내 저명 학술지 자연과학, 공학계열: 국제 저명학술지

4.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10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 근거
교원의 전문성	5		
교원의 책무	5		

5. 교원 복무(가감점 ±5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 근거
교원 복무 준수	±5		

※ 교육중점교수 재계약 및 승진 심사기준 [별표2]의 내용에 열거하고 있는 평가항목을 기초로 평가

※ 평가근거는 구체적으로 기술

평가 점수 합계	
----------	--

20 . . .

평가위원 직위 : 직급 : 교 수 성명 : ①

[별지서식4] 교육중점교수용(학부·학과·전공)/단과대학(원) - 2026.3.1. 이후 심사대상기간 개시 교원
(신설 2026.1.1.)

(재계약·승진) 임용 교원심사평정 의견서

평가 대상자	학부 · 학과 · 전공		직급		성명	
현재 평가 기간						

평가영역 평가위원	강의평가 (40)	교육활동 (30)	연구 (20)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10)	교원복무 준수(±5)	합계
A						
B						
C						
D						
E						
F						
G						
H						
I						
J						
중 합 의 건 :						

* 심사위원은 무기명으로 기재 / 대외비 처리 요망

20

심사위원장 : (인)